■ 又剛에세이

인공지능과 인간

권이혁
(전 대종원 명예총재)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렸던 우리나라의 이세돌 9단과 구글 AlphaGo의 대국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대결이었던 이 대국이 바둑기사는 물론이고 전 인류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물론이다. 나는 불행하게도 바둑에 관한 조예가 약해서 그거 TV를 통해서 해설을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알파고(AlphaGo)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바둑 프로그램이다. 알파고라는 이름은 구글의 지주회사 이름인 '알파벳'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알파(∝)와 고(바둑을 뜻하는 한자의 '碁'를 일본에서는 '고(go)'라고 발음한다)에 유래한 영어 단어다. '알파'는 '제일', '처음' 등을 뜻한다. 알파고는 단일 컴퓨터로 구동되는 '단일 버전(Single Version)과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산 버전(Distributeed Version)' 두 가지가 있으며, 2015년 10월의 분산 버전은 1,202개의 CPU와 176개의 CPU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5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이세돌은 4차 대국에서만 승리했다. 이세돌의 승리는 전 세계의 인사들을 열광시켰고 인간이 기계에 승리했다고 탄성을 보냈다. 대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적인 세기의 대결로 주목받는 이 대국은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됐다. 한국어와 영어로 공식해설이 제공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KBS 2를 통해 생방송되었다.

알파고는 치밀하고 정교한 수읽기와 정확한 집계산 능력을 앞세워 1-3국을 연속으로 승리하여 우승을 확정지었으며, 미화 10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은 UNICEF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교육 및 바둑 관련단체에 기부하였다.

이세돌 9단은 4국에서 승리한 후 기자회견에서 "알파고가 노출시킨 약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알파고는 백보다 흑을 힘들어 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가 나오면 버그 형태로 몇 수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 알파고는 생각 못했을 경우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고, 데이비 하사비스 최고경영자(CEO)는 "신경망은 스스로 바둑을 두며 학습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식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9단과의 대국을 통해서 이런 한계를 알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패배를 통해 알파고의 한계를 알게 된 것을 이 대회의 성과로 꼽았다.

"인공지능이 보편화 되는 제 4차 산업혁명 때는 법률가가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다. 살아남으려면 사법부도 변해야 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말한 것은 우리들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본다. 사법 분야만이 아니라 의료분야에도 비슷한 현상이 출현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시절(1983년) 어느 모임에 출석하여 회장인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라 발전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더니 어느 회원이 "회장은 과학기술발전만을 고집하는데 그에 따른 인간의 비밀유지나 인간성의 쇠퇴에는 어찌 대처하겠느냐"고 물어 한때 우물우물했던 일이 떠오른다.

이번 대국을 통해서 인간 이세돌의 인격은 새로 재평가됐다. 그의 의지력·인간성·품위 등이 극찬을 받았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기계에게 인간이 질 수는 없다'는 그의 고상한 철학에 경의를 표한다.

노동법해설 |

임금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권오일(복야공파 35세 한국정보평가협회 회장)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의 유일한 수입의 원천으로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기준으로 임금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진정사건 중 임금지급과 관련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노사간에 가장 관심이 많고 중요한 것이 임금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임금지급 원칙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 통화지급 등 4대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이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뿐 아니라 노동관행도 임금지급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근로계약이 유지되더라도 결근, 개인적사유의 휴직, 공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간, 쟁의기간, 군복무기간, 예비군훈련 등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법령,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지급 의무도 없다.

2. 직접지급 원칙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직접지급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통화지급의 원칙이나 전액지급의 원칙과는 달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임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된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 근로자가 제3자에 임금수령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에 해당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원법 적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전액지급 원칙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보호 및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경우처럼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소비조합 구매대금, 사택료, 대부금 등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의 일부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법령, 단체협약만을 공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임금 상계는 불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며, 근로자 스스로가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가불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일이 되기 전에 지급된 임금이므로 가불금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택시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납금 부족액을 기본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결근, 징계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정당한 직장폐쇄기간, 태업기간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의무도 없다.

4. 통화지급 원칙

임금은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자기앞수표는 거래상 현금과 같이 통용되므로 통화로 볼 수 있으나, 지급이 보증되지 않는 당좌수표, 주식, 어음 등은 통화지급 원칙에 위배된다.

5. 정기지급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매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즉, 역일상의 1월을 의미하며, 일정한 날짜(기일)는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특정일을 의미한다. (예, 매월 20일, 25일, 30일 등)

결정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후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임금지급일 변경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화재, 홍수, 기타 천재, 지변, 사변 등)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을 청구하면 정기지급일 전이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장

첫째, 일반 도급사업의 경우 ①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둘째, 건설도급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2007년 7월 27일에 제44조의2를 신설하여 건설업에 대하여 임금지급에 있어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는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임금미지급 책임의 주체

임금미지급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된다.

사업경영담당자도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면 임금지급 책임자가 된다. 정리회사 관리인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 책임이 있고,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8. 임금미지급 구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이나 사법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미지급 사건은 정부가 일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임금미지급 관련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사건 등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도산된 기업의 근로자를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이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기획

權氏烈傳 ⑫

民松 權寧禹

(지난호에 이어)

문제는 마인드다.

경영은 인간을 다루는 예술이다. 경영자의 마인드에 따라 기업의 비젼과 발전방향이 달라진다. 교육과 운수업은 다른 것인가? 올바른 경영마인드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은 동일하다.

세명대학의 두가지 주요 추진과제는 학군단과 한의대이다. 학군단은 정원이 있어서 국방부가 인원을 늘릴수 있는 처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학군단이 생기면 국방의 의무와 취업의 유리점등 그것은 바로 우리 세명인에 대한 혜택이다. 나는 부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 결국 세명 캠퍼스에 학군단 사관후보생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감격스럽게 들을 수 있었다.

한의학과 개설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서 우선 부속 한방병원부터 개원하였다. 이로서 한의과 개설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결국 임상실습은 물론 지역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니 교육에 투자한 보람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다.

세명대학은 취업률이 90% 이상이다. 전문지식이나 자격증의 취득을 권장한 결과이고 학과도 비실용적인 과목은 과감히 줄여나갔다.

나는 대학의 자유를 신봉한다. 그러나 자유방임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성취도를 측정하여 교수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지방대학생들의 자유방임적인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교수들로 허여금 기업을 다니며 취업을 부탁하도록 했다. 초기엔 부정적이였지만 취직이 된 제자가 능력을 인정 받으면 그것이 곧 스승의 명예가 아니고 무엇이 겠는가? 그 후 교수들도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도 우리 학교와 기업이 산학협동을 맺는데 노력을 하였다. 사회적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그러지 못한 교수이 대인관계의 시범을 보이며 서로 도와 가며 학생취업에 노력하면 지방대학의 위기도 해소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수들에게 우수 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리도록 하여서 교수들이 각 고교를 다니며 진심으로 교사들을 대하면서 믿음을 주게 하니, 결국 그 학생이 학교를 빛나게 해 주는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미국인이 와서 영문과 교수를 통역으로 불렀더니 이론에 강한 교수는 회화가 매끄럽지 못하였다. 이것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학교의 영어교재는 전부 실용적인 문구로 되어있다. 전화 받는 법, 자기소개법등 위주로 한다. 국어교육도 마찬가지로 문학도 중요하지만 이력서, 소개서 쓰기등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세명대학과 대원과학고 출신들은 직장에서도 곧잘 외국어를 잘 한다고 하는데 이는 역시 이런 교육의 덕분이 아닐까 한다.

명문대학은 선후배가 끌어 주지만 우리 세명, 대원과 같은 신설대학은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나 오로지 실용적인 교육으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무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여 인정 받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 안동 경북독립기념관 선정 6월의 독립운동가

難馬 權五卨 (1897-1930)

독립운동가,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 교육가, 농민운동가, 애국열사

34년의 짧은 생애에 엄청난 경력을 지니고 불꽃처럼 살다간 權門의 영걸 권오설 선생이 경북독립관의 올해 <6월의 인물>로 선정됐다.

難馬, 길들여 지지 않은 말, 그의 부친 권술조(權述朝 복야공파 34세)가 아들의 祭文을 지으면서 한탄하던 그 말은 "아, 원통하고 슬프다! 내가 너와 인간 세상에서 부자(父子)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것이 겨우 33년인데… 네가 과연 죽었느냐. 죽었다면 병으로 죽었느냐. 충직(忠直) 때문에 죽었느냐. 사람의 삶은 올바름에 있는 것이니, 네가 만약 죽을 자리에서 죽었다면 어찌하겠는가!" 였다.

시골에서 동화학교, 남명학교를 마치고 대구고보를 경주 최부자 '최준'의 도움으로 수학하고 光州에서 고용원으로 일하다가 3.1만세운동에 참여하니 독립운동가이며, 그의 서적에서 '삼일신고'와 대종교 계통의 조직표가 나오는데 이는 서울중앙학교 재학 시에 대종교도이며 국어학자인 김두봉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며 이는 곧 민족해방에 전념한 민족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귀향하여서는 원흥의숙과 풍산학술강습회를 설립운영한 교육자며 계몽가이다. 또한 가곡농민조합과 풍산소작인회 등을 조직하여 투쟁한 사회노동운동가였다. 결정적인 것은,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까지 한 사회주의자로서, 6.10 만세운동의 실제적 실행자로 천도교, 민족계열, 사회계열을 아울러서 스러져가는 민족정기에 불을 당긴 위인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의 대상자이기도 하다.

당시 내건 캐치프레즈도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6·10 만세운동 격문

- 대한독립운동자여 단결하라!
- 일체 납세를 거부하자!
- 일본문자를 배척하자!
- 조선인 관리는 일체 퇴직하라!
- 일본인 공장의 직송은 총파업하라!
-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라!
- 일본인 교원에게는 배우지 말자!
- 일본 상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자!
-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 군대와 헌병을 철거하라!
- 재옥 혁명수를 석방하라!
- 보통교육은 의무교육으로!
- 교육 용어는 조선어로!
-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철폐하라!
- 일본 이민제를 철폐하라!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더욱 극적이다. 倭政에 의해 옥중에서 고문 치사되니 이는 곧 烈士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2000년 대 까지도 그의 손자 권모와 양아들 권대용이 겪은 이중의 고난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집안 상황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최초 입향조 권항(1403~1461)은 류개의 손자인 류서의 사위가 되면서 당시 풍습에 따라 류씨 땅인 이곳에 온 것이고, 그 증손자 권질(1483-1545)이 갑자사화, 그 동생 권전(1486-1521)은 기묘사화로 집안이 망하니 그 권질의 딸 중의 하나가 그 퇴계 이황의 유명한(?) 두번째 부인 권씨이다.

"유가(儒家)에는 3년마다 금부도사가 드나들어야 하고, 갯밭에는 3년마다 강물이 드나들어야 한다" 즉 올 곧은 선비의 집에는 '부당한 죽음의 그림자'가 너울거려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그 전통이 권오설에게까지 이어져 일부 반민족적 부당한 무리들의 비난이 있기도 하지만 권오설, 권오직 형제외에 권준희, 권오상, 권오운, 권오창 등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근거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의 죽음은 의문에 싸여 있으며 일제가 적극 통제(철제관, 평장)하였으나 안동역에서 가일마을까지 침묵의 행렬은 긴 띠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는 분명히 권문의 위인이고 자랑이다. 그 누군가가 말했다.

"겨레에 대한 변함없는 단심(丹心)처럼 권오설의 붉은 인장이 찍힌 삼일신고와 핏빛으로 검붉게 녹슬은 그 주검의 철제관은 한민족의 과거와 미래의 명암을 강렬하게 조명하고 있으며 그의 장렬한 죽음과 아버지 권술조의 애끓는 편지에서 안동인의 뼛속 깊이 깃든 '효(孝)와 충(忠)'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